

「 빌리브 리버런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22-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 최고 29층 / 4개동 총 3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개요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면적기준)	공급 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 세대수	배정세대수 (예비)	입주 예정시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78	78.3367	22.8124	101.1491	48.3106	144.1897	24.8608	101	10(30)	'26년 ##월 (예정)
	84A	84.7713	23.3535	108.1248	52.2791	154.7009	26.9029	156	16(48)	
	84B	84.6505	23.2623	107.9128	52.2045	154.4225	26.8645	54	5(15)	
	합 계							311	31(93)	

※ 상기 공급내역은 향후,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관별 세대수 배정내역

(단위 : 세대)

구분	78		84A		84B		합 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2	(6)	3	(9)	1	(3)	6	(18)
	장기복무 제대군인		2	(6)	3	(9)	1	(3)	6	(1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6)	3	(9)	1	(3)	6	(18)
	장애인	울산	1	(3)	1	(3)	1	(3)	6	(18)
		부산	1	(3)	1	(3)	0	0		
		경남	0	(0)	1	(3)	0	0		
	중소기업 근로자		2	(6)	4	(12)	1	(3)	7	(21)
합 계		10	(30)	16	(48)	5	(15)	31	(93)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일정

구분	일자(예정)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2. 12. 01. (목)	일간신문 및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당사 빌리브 리버런트 홈페이지 (https://riverent.villiv.co.kr)
건본주택 오픈	2022. 12. 02. (금)	당사 빌리브 리버런트 홈페이지 (https://riverent.villiv.co.kr)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2. 12. 12. (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또는 청약홈 앱 신청
당첨자발표	2022. 12. 21. (수)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또는 청약홈 앱 조회
계약체결	2023. 01. 02. (월)	당사 빌리브 리버런트 건본주택 (주소 : 울산시 남구 화합로 125번길 4)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접수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또는 빌리브 리버런트 대표번호(052-258-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목)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

추천 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자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3. 과거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
- ※ 청약제한사항 확인 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4㎡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III.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분양일정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부적격으로 당점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점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당점자선정 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공급금액, 공급대상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점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점자로 관리되어 향후, 주택 청약 신청함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2.12.01.(목)**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희망하는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V.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 인터넷 청약접수

-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원칙으로 함.
- 접수시간 : 09:00 ~ 17:30

■ 견본주택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만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제한함)

- 방문 접수시간 : 11:00 ~ 15:00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2.01.(목) 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발급기준	내용
필수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발급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단, 대리인 위임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추가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제3자(대리인)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신청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명 또는 날인

V. 위치 안내

[건 본 주 택]	[사 업 지]	문 의
<p>울산고속 버스터미널 울산시외 버스터미널 기아자동차 경남은행 건본주택</p> <p>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p>	<p>태화강 번영강남지하차도 강남고 월봉초 빌리브 리버런트 세이브존 제이에스 웨딩홀 울산 병원</p>	<p>[대표전화] 052-258-1000</p> <p>[홈페이지] https://riverent.villiv.co.kr/</p>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25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22-4	